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 안 이 유

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동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등이 개정('96. 7. 1) 됨에 따라 우리도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함 으로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 요 골 자

- 도로점용료 산정금액 절사 < 조례 제3조 제5항 >
 . 10원 미만 → 100원 미만
-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및 기타관의 직경구분을 세분화 < 별표 1 >
 . 「직경 1m초과」 → 「직경 1.0m초과~2.0m이하, 직경 2.0m초과~3.0m이하, 직경 3.0m초과」로 세분
- 들출간판을 간판에 포함 명문화 < 별표 1 >
- 소액 부징수 < 조례 제5조 >
 . 500원 미만 → 5,000원 미만

□ 근 거 법 령

- 도로법 제43조 제2항
-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

□ 기타 참고 자료 붙임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소액부징수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.

제3조제1항 관련 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